

지난 2001년 8월 보스턴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련의 국제무역 부문의 각종 협상에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IFLA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IFLA의 입장”(이하 “입장”)이라는 문건을 최종 승인하였다. 현재 세계무역기구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산업일련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서 도서관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면서 지적재산권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제적인 무역 협상과 조약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와 같은 비영리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입장”은 지난해 11월 초 카타르 도하회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IFLA에서 우리 협회에도 전달해 왔기에, 우선 “입장”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WTO에 대한 IFLA의 입장

### 서론

1. 140개 이상의 회원국으로 성장한 WTO는 국제무역과 관계되는 다양한 협약을 갖고 있다. 도서관과 정보영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협약은 서비스산업일련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이다.
2. 도서관은 공공재이다.  
도서관은 독특한 사회적 유기체로 나이, 종교,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언어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성에 대한 이념과 폭 넓은 정보범주를 제공한다. 도서관의 목표로 이루어온 안정적인 기초 하에서 문화적 팽창과 정당한 정보접근과 지적자유를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구가해왔다.
3. 대규모 국가단위나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의 도서관으로부터 공공 및 학교도서관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도서관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상호연관된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잘되고 있는 도서관은 이들의 콘텐츠 이용과 접근의 필요성 기술과 더불어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인간표현의 모든 범주를 본질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4. WTO의 결정은 특별히 비영리 기관인 도서관의 향후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가 확산되고 있다.

### 배경

5. WTO 및 그 회원인 국제통상 당국은 지속적인 기반위에 정책형성과 정책적용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석자들의 항의로 이루어지는 비정기적인 각료급 회의가 협상의 가장 가시적인 표명이지만, 그 과정은 공적으로 면밀한 검토없이 결론지어지면서 연속된다. WTO의 독특한 것은 일반적인 국제협약에서와 같이 강력한 시행절차를 운영의 일부로 함에 있어 야기되는 분쟁 메카니즘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IFLA는 WTO와 각국의 무역정책 심의 내용에 관하여 통지하고 아울러 가능한한 도서관 및 관련 문제를 향상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한다. 국제통상 문제의 인식은 도서관 봉사와 관련된 국가정책, 프로그램, 법률을 형성함에 있어 효과적인 도서관 옹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 구체적인 관심사

### 비영리 도서관

6. GATT 협정은 도서관과 같은 공공부문 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모든 분야를 대외 경쟁에 개방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어떠한 회원국내에서도 설립이 가능하고, 공공부문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로 외국기업은 공공부문 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과 경쟁할 것이며, 공공부문 기관에 의한 정부 보조금의 동등한 수준 등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하위 중앙정부(주/도, 지역 및 지방 자치 및 관리위원회)는 회원국에 적용되는 어떠한 협정에도 포함된다.
7. GATS 협정은 “정부 당국의 집행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평가들은 WTO가 이 조항을 너무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GATS 협정 자체에는 “정부 당국의 집행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상업적 기반에 의해서나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일체의 서비스”로 언급되어 있다. 교육 서비스의 개별 이용자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하고 있는 상업적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도서관 봉사에 대한 GATS의 도전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허용되는 ‘경쟁’의 개념이 미온적으로 나타나는 동안, 도전의 궁극적인 결과는 국가, 지역이나 지방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은 공공도서관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세금 지원 없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손상될 수 있을 것이다.
8. GATS 협상에 대한 제안서에서 각국은 GATS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서비스 부문의 약속을 하게 된다. 2001년 GATS 제2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13개국(블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갬비아, 기니아비사우, 홍콩, 아이슬란드, 일본, 뉴카레도니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미국, 베네주엘라)이 도서관, 기록물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 (1) 이러한 구체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비록 도서관 서비스를 열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커뮤니케이션(온라인 정보과 데이터 검색, 전자데이터 교환)과 같은 다른 GATS 부문에 부합될 것이고, 많은 국가가 GATS 협상에 참여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서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9. IFLA는 회원국들이 GATS의 상황하에서 자국의 무역 협상가들에게 도서관의 가치와 관심사항을 항상시킬 것을 권고한다. 비영리 도서관을 위한 서비스에서 무역 자유화에 대한 잠재적인 포괄적인 의미는 공개적으로 토론되어야 한다. 협상가들은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이 GATS의 도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도록 강력하게 격려하여야 한다.

### 지적 재산

10. TRIPS 협정은 WTO의 시행 장치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하에 제정된 베른협약 및 여타 협약에 적용한다. TRIPS는 직·간접적으로 국가 저작권 정책 및 법칙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현재까지 한 실행으로 WTO 분쟁 패널이 국제통상 조약협정에서 위배된 국가 저작권법이 허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도서관에서 공정이용 및 유사한 공정 관례에서부터 보존복사에 이르기까지, 허용된 이용은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이용자 권리로 간주해왔다. 지적재산권 분쟁이 제출되었을 때, 국가 저작권 정책 논쟁이 추구하는 공익과 콘텐츠 소유권간의 균형이 WTO에 의해 고려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거의 없다. WTO 분

쟁 패널은 “사적권리와 공익의 합리적인 균형에 의존하는 비상업적 가치에 상관없이 지적재산권 요구 분쟁을 해결할 것 같다.”

(참고문헌: Steven Shrybman, “Information Commodification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FLA Jerusalem Conference, Aug, 2000. <<http://www.ifla.org/IV/ifla66/papers/176-48e.htm>>)

11. WTO의 규정량은 소수의 허용된 이용과 이용자를 대신하는 지원적 노력의 비책이 이탈되는 보호의 확대를 지지함에 따라 국가 저작권법의 발전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IFLA는 자국 내의 저작권이 있는 입법으로 WTO 정책의 적용을 통하여 도서관 및 도서관 이용자의 이익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일하도록 그 회원에게 촉구한다.

### 문화적 다양성

12. 공공의 자금으로 지원된 도서관은 문화적 영역의 일부이다. 그런 도서관은 특별히 문학이나 문화적 사업의 보존과 보급과 같은 분야의 진흥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관계된다. 도서관은 문화를 위해 제안된 것들을 보호하는 장치의 일부이어야 하며, 또한 이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제통상에서 문화적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허용되는 별도 조약의 일부이어야 한다.
13. IFLA는 지역이나 국가 문화상품의 개발을 위한 인식과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및 국제적 문화단체와 함께 일할 것이다. 이런 동맹의 목적은 문화적 다양성 창출과 금융이나 기업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동질적이거나 범세계적인 문화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의 촉구이다.
14. 국가의 문화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원하는 반면, IFLA는 도서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집되고 분배되는 합법적으로 생성된 정보나 문화적 콘텐츠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어떠한 방해물도 반대한다. IFLA는 인쇄물이나 디지털 콘텐츠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나 어떠한 세금도 반대한다. 그러한 수단은 지적 자유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결론

15. 도서관 및 정보협회, 도서관, 정보 서비스기관, 그리고 관심 있는 개인으로 구성된 활동적인 국제 연맹으로서, IFLA는 WTO에게 도서관과 정보 서비스기관을 대표하여 옹호함과 동시에 회원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전략적 입장이다.
16. 강력한 공공부문을 보장하기 위하여 IFLA와 회원국은 공공부문을 위한 국제통상 협약의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인지가 필요한 도서관과 정보, 기록물보존소, 박물관, 그리고 교육 및 기타 조직과 공동으로 일을 수행하며 연계 구축을 지속할 것이다.

(번역·정리 : 안태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자료팀장), 이용훈(협회 기획부장)

감수 : 정동열(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